

행위허가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행위구분	[] 용도변경 [] 개축·재축·대수선 [] 파손·철거 [] 비내력벽 철거 []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[] 용도폐지 [] 증축 [] 증설
------	---

신청인	① 성 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
	주 소	(전화번호:)

단지개요	위 치	(단지명:)			
	세대수		층수 및 동수	층 동, 층 동, 층 동, 층 동	

행위대상 시설개요	시설종류	[] 공동주택 [] 부대시설 [] 복리시설			
	건축면적	m ²	② 연면적	m ² (바닥면적: m ²)	
	③ 주용도		④ 부속 용도		
	공사면적	m ²	층 수	지하()층, 지상()층	

⑤ 총사업비	천원(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·택지비는 제외합니다)				
착공예정일	년 월 일	사용검사예정일	년 월 일	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 별 자 치 시 장
특 별 자 치 도 지 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첨부서류	1. 용도변경의 경우
	가.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
	나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
	다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	2. 개축·재축·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
	가. 개축·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. 이 경우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.
	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	3. 파손·철거(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)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
	가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
	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	4.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
	가.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
	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	5. 증축의 경우
	가.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. 이 경우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.
	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	6. 증설의 경우
	가.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. 이 경우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.
	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
유의사항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9조제1호의4	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	---

작성방법

-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, 주차장·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.
- ③·④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.
- ⑤는 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,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